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의 실시와 신속히 수입·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와 영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 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제한기간의 연장, 벌칙형량의 하한선 적용 및 벌금의 병과 등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5년 1월 27일자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을 법률 제 7374호로 공포했다.

1. 주요 개정내용

가. 위해식품 등의 평가제도 도입 (제13조 신설)

- (1) 환경오염 및 새로운 식품의 출현 등으로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식품, 첨가물 및 원료·성분 등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식품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제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3)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대한 과학적 평가 및 신속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식품의 수입·판매금지제도 도입 (제16조의2 신설)

- (1) 종전에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나 국내유통단계에서 수거검사를 거쳐 위해성이 확인된 수입식품에 대하여만 수거·폐기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입식품중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 사전에 국내반입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2) 특정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이 생산 지역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당해 식품의 수입 또는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3)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식품이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이러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 (제17조제2항 신설)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직으로 전환된 이후 연고·온정주의 등으로 인하여 관할 지역에 대한 위생감시가 소홀하여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효율적인 위생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다른 관할구역에 대하여 또는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3)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교차감시를 함으로써 허가 및 단속기능이 분리되어 영업자와의 유착 및 온정주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 강화 (제20조의2)

- (1)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감시 공무원의 인력으로는 60만개에 이르는 식품접객업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현행 명예식품감시원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감시기능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현행의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공무원인 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지원 역할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명칭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변경하고 관할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어 단독으로 음식점 등의 식품접객업소에 출입하여 위생관리에 필요한 지도·계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위생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계몽을 통하여 식품단속공무원의 역할을 보완하고 식품접객업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시민식품감사인제도 도입 (제20조의3 신설)

- (1) 식품제조과정의 위생관리는 영업자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자율관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위생관리상태를 점검받도록 하는 시민식품감사인제도를 도입하여 위생관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2)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식품위생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중 식약청장·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하고, 시

민식품감사인이 분기별로 1회 이상 영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감시공무원에 의한 출입·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 (3) 외부 전문가인 시민식품감사인으로 하여금 위생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점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영업허가등의 제한 강화
(제24조제1항 및 제2항)

- (1)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장기간 식품관련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 (2)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을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간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3) 위반행위시 5년 이상 식품영업을 제한받게 되면 상당한 손실이 있게 되므로 영업자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제하는 등 준법 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위해식품등의 회수 의무화
(제31조의2 및 제58조제1항)

- (1) 종전에도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유통시킨 영업자는 그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는 있었으나, 이에 따른 회수율도 매우 낮고 회수에 필요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등 회수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위해식품등을 제조·수입한 영업자는 그 식품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되, 회수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 (3)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된 경우에는 영업자가 이를 신속히 회수조치를 하게 되어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강화
(제63조제1항, 제67조제1항 및 제69조)

- (1)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위생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빈도가 높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2)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식중독 환자 신고의무,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식중독 사고 발생시 영양사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처분 근거를 마련함.
- (3) 다중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식중독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위반사실의 공표제도 도입
(제65조의2 신설)

- (1)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식품위해사범에 대하여 행정처분외에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려는 것임.
- (2) 이 법의 위반행위로 영업 또는 품목제조 정지처분이나 과징금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그 처분내용과 기업체 및 제

품의 명칭 등 영업정보를 공표하도록 함.

- (3) 식품영업의 경우 영업자의 개인보다는 기업 이미지가 소비자들의 구매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의 위반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면 보다 실효성있는 제재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영업자의 준법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포상금 지급기준의 인상(제71조의2)

- (1)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30만원 이하 등으로 지나치게 낮아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포상금을 인상하여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1천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3) 포상금이 대폭 인상됨으로써 위반행위의 신고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식품위생업체의 범령준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카.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한 형량의 하한선 적용(제74조 신설)

- (1) 처벌의 실효성 미흡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의성을 가진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정 형량 이상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2) 현재는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위해식품을 제조한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한선을 규정하고, 이를 판매한 경우에는 그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함.
- (3) 악질적인 위해식품사범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하한선을 설정하고 벌금을 인상함으로써 유사한 범죄의 재발 방지 등 범죄억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현 영	개 정
<p><신 설></p>	<p>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p> <p>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지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p> <p>④제3항의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⑤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의 결과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금지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p> <p>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의2(특정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등이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위해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등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p>

연 영	개 정
<p>제17조(출입·검사·수거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 제20조의2 및 제32조의2제8항에서 같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p>	<p>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p> <p>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p> <p>③제2항의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 등이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나 영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식품등이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p> <p>⑤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제17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 ----- ----- ----- -----</p>

연 영	개 정
<p>한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p><신 설></p> <p>②제1항의 경우에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p> <p><신 설></p> <p>제17조의2(식품등의 재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 또는 제17조의</p>	<p>식품등의 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p> <p>-----</p> <p>-----</p> <p>-----</p> <p>-----</p> <p>-----</p> <p>-----</p> <p>-----</p> <p>-----</p> <p>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관련 위해방지업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응원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 -----</p> <p>-----</p> <p>-----</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의2(식품등의 재검사) ① -----</p> <p>-----</p> <p>-----</p>

연 명	개 정
<p>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당해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정한 검사를 위하여 <u>특히 필요한 때에는</u>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영업자에게 그 검사결과를 <u>통보</u>할 수 있다.</p>	<p>----- ----- ----- ----- <u>필요</u> 한 때에는 ----- ----- <u>통보</u> 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 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u>제20조의2(명예식품위생감시원)</u>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u>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u> 둘 수 있다.</p>	<p><u>제20조의2(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u>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관리를 위하여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중 당해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또는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를 <u>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u> 위촉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u>명예감시원의 위촉</u> 방법,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u>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의</u> 직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u>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영업자”라 한다)에</u> 대한 위생관리상태의 계도에 관한 사항 2. 유통중인 식품등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 표시·과대광고 금지의 위반행위에 관한 <u>관할 행정관청에의</u> 신고 또는 자료제공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u>식품위생감시원이</u> 행하는 식품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사항
	<p>③<u>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u>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권한을</p>

연 영	개 정
	<p>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⑤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천받은 소비자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3.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p>⑥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제2항제1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⑦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는 때에는 승인서 및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⑧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직무의 범위 및 교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의3(시민식품감사인) ①제22조의 규정에</p>

<신 설>

연 명	개 정
	<p>의하여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등의 위생 관리상태의 점검을 위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중 식품위생관련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식품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시민식품감사인(이하 이조에서 “시민식품감사인”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대한 위생관리상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식품안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자에게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p> <p>③시민식품감사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사항을 해당 영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④시민식품감사인은 그 업무상 알게 된 영업자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원 영	개 정
	<p>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거나 위촉한 시민식품감사인을 해촉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촉한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일자 및 인적 사항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식품감사인이 권고한 개선내용 및 이에 따라 조치한 개선사항 3. 시민식품감사인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일자 및 사유 <p>⑥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영업자의 영업장소 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의 권고사항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시민식품감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제조·판매하여 유통중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해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 <p>⑦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위촉절차 및 직무의 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p>

연 영	개 정
<p>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p> <p>1. ~ 2의2. (생 략)</p> <p>3.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p> <p>3의2. (생 략)</p> <p><u><신 설></u></p> <p>4. 5. (생 략)</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p> <p>1. 1의2. (생 략)</p> <p>2.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p> <p>2의2. (생 략)</p>	<p>로 정한다.</p> <p>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 ----- -----</p> <p>1. ~ 2의2. (현행과 같음)</p> <p>3. ----- ----- 취소(제4조 내지 제6조·제8조 또는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p> <p>3의2. (현행과 같음)</p> <p>3의3. 제4조·제5조·제6조 또는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p> <p>4. 5.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1의2. (현행과 같음)</p> <p>2. ----- ----- 폐쇄명령(제4조 내지 제6조·제8조 또는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p> <p>2의2. (현행과 같음)</p>

연 영	개 정
<p><u>〈신 설〉</u></p> <p><u>제30조(영업의 제한)</u> 시·도지사는 <u>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중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영업자”라 한다)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제31조의2(식품등의 자진회수)</u>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한 영업자는 당해 식품등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유통 중인 당해 식품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3. 제4조·제5조·제6조 또는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p> <p><u>제30조(영업의 제한) ①</u> -----영업의 질서유지----- -----식품접객영업자-----</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u>제31조의2(위해식품등의 회수) ①</u>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당해 식품등이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유통중인 당해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미리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당해 식품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58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p>

연 영	개 정
<p>제32조(위생등급)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u>제조·가공업소 또는 식품접객업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u></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u>영업시설 개선</u>을 위한 용자사업과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u>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u>을 위한 사업의 우선지원등을 할 수 있다.</p> <p>③·④ (생 략)</p> <p>제42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등)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u>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p> <p>1. ~ 5. (생 략)</p> <p>제56조의2(공표)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u></p>	<p>면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식품·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p> <p>제32조(위생등급) ① ----- ----- ----- <u>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u> ----- ----- ② ----- ----- ----- <u>위생관리시설 개선</u> ----- ----- ③·④ (현행과 같음)</p> <p>제42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등) ----- ----- ----- <u>식품위생심의위원회</u>를 둔다. 1. ~ 5. (생 략)</p> <p>제56조의2(위해식품등의 공표)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p>

연 영	개 정
<p>있다.</p> <p>② (생 략)</p> <p>제58조(허가의 취소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p> <p>1. ~ 4. (생 략)</p> <p><신 설></p> <p>4의2. (생 략)</p> <p>5.·6.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제63조(면허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조리사가 그 조리업무에 있어서 식중독 기타 위생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p> <p>3.·4. (생 략)</p>	<p>를 명할 수 있다.</p> <p>1.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p> <p>2.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8조(허가의 취소 등) ① -----</p> <p>-----</p> <p>-----</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4의2. 제31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p> <p>4의3. (현행 제4호의2와 같음)</p> <p>5.·6.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63조(면허취소등) ① -----</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영양사가 그 직무를 행하거나 조리사가 그 조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 그 밖의 위생에 관한 중대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때</p> <p>3.·4.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의 귀속방법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생략) <u><신설></u></p> <p>제67조(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①식중독을 일으킨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p> <p>⑤제1항 및 제4항의 단서의 ----- ----- ----- ----- ----- ----- ----- ----- -----</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6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6조·제58조·제59조·제62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p> <p>제67조(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또는 한의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배설물의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식중독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p>

연 행	개 정
<p>③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u>영업시설개선</u>을 위한 용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u>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u> <p>3. (생략) <신설></p> <p>5. 6. (생략)</p> <p>7. <u>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u>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p> <p>④ (생략)</p> <p>제71조의2(포상금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신설></p> <p>제74조(벌칙) 제4조 내지 제6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8조(제69조에</p>	<p>③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u>위생관리시설개선</u> ----- ----- 2. -----<u>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u> 및 <u>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u> <p>3. (현행과 같음)</p> <p>4. <u>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u></p> <p>5. 6. (현행과 같음)</p> <p>7. <u>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u>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71조의2(포상금 지급) ----- ----- -----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 -----</p> <p>제74조(벌칙) ① <u>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마황(麻黃)·부자(附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u></p> <p>② <u>제1항의 경우에 제조·가공·조리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u></p> <p>제74조의2(벌칙) ----- -----</p>

